

(04427)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3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8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임아영[6578]/E-mail : rimaah90@kma.org

문서번호 대 의 협 제 841-3578호

시행일자 2023. 6. 22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및 게재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-1641(2023. 6. 21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한 ‘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(TPI) 인정범위’ 및 ‘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 한의과 중복진료(외래) 인정범위’ 심사지침 2항목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여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주요내용 : [붙임자료 #2] 참조

(신설)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

-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(TPI) 인정범위
-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·한의과 중복진료(외래) 인정범위

○ 시행일 : 2023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

#붙임자료 :

1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.

2.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부.
3.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.”



*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